



## (고용노동부)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

[시행 2021. 11. 18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1-90호, 2021. 11. 18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직업능력정책과), 044-202-7285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고시는 「인적자원개발 기본법」 제14조제1항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정부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(이하 "인증제"라 한다) 운영과 관련하여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.

**제3조(용어의 정의)**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"란 정부가 인적자원개발을 통하여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하여 이를 달성한 기관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.
2. "공공부문"이란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·보좌기관을 포함한다), 지방자치단체,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및 출연 연구기관·연구회, 지방교육행정기관, 학교, 국립대병원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3. "민간부문"이란 「고용보험법」 제8조에 따른 사업장 중 제2호에 따른 공공부문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.
4. "인증주체"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인증기관을 말한다.
5. "인증심사"란 인증을 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포함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.
6. "심사위원"이란 인증심사를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·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 전문가를 말한다.<개정 2018. 12. 26.>

### 제2장 운영 체계

**제4조(인증부문)**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은 공공부문 인증사업과 민간부문 인증사업을 구분하여 시행한다

**제5조(총괄부처)** 공공부문 인증사업은 교육부, 민간부문 인증사업은 고용노동부를 총괄부처로 한다.

**제6조(인증주체)** ① 공공부문은 교육부·인사혁신처가 인증주체가 되고, 민간부문은 교육부·산업통상자원부·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주체가 된다.<개정 2018. 12. 26., 2021. 11. 18.>

② 부문별 인증주체로 참여하는 관계부처는 인증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며 인증심사 및 컨설팅 등 부대사업의 추진을 위한 인력지원, 예산확보 등에 노력한다.

### 제3장 운영 조직

**제7조(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)** ① 정부는 인증심사를 위하여 비상설 협의체로 인증제 관계부처 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운영한다.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교육부·산업통상자원부·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·인사혁신처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18. 12. 26.>

③ 협의회 위원장은 교육부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하며,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 사고시에는 「정부조직법」상의 직제순에 의한 상위부처 위원이 대리한다.<개정 2018. 12. 26.>

④ 협의회의 간사는 교육부의 인증제 사업 담당자로 한다.

⑤ 협의회는 인증제 제도운영, 법령 정비, 예산 등과 관련하여 총괄·조정·협의한다.

⑥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. 다만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 2018. 12. 26.>

**제7조의2(실무협의회)** ① 정부는 인증업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하고 사업매뉴얼을 작성하는 등의 필요 업무를 담당할 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.

② 실무협의회는 총괄부처의 5급 이하 실무자,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영기관의 실무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실무협의회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, 임시회의는 실무협의회 구성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.

[본조 신설 2018. 12. 26.]

**제8조(인증위원회의 구성)** ① 정부는 인증제 사업의 실행을 위해 비상설조직으로 인증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구성한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교육부·산업통상자원부·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·인사혁신처 소속 과장급 공무원

2. 교육부·산업통상자원부·고용노동부·중소벤처기업부·인사혁신처에서 추천한 민간전문가<개정 2018. 12. 26.>

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추천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<개정 2018. 12. 26.>

⑤ 삭제<2018. 12. 26.>

⑥ 삭제<2018. 12. 26.>

⑦ 삭제<2018. 12. 26.>

**제8조의2(인증위원회 회의)** ① 위원회는 민간부문 인증위원회와 공공부문 인증위원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부문별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
  2. 인증 심사결과 조정, 인증 결정·취소에 관한 사항
    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  - ③ 인증위원회 위원 중 인증주체 부처를 대표하는 위원은 인증위원회 출석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인증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    - ④ 위원회는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.
    - ⑤ 인증위원회는 의결 내용을 포함한 회의록(제4항에 따른 의결의 경우에도 같다)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[본조 신설 2018. 12. 26.]

**제9조(인증 운영기관)** ① 인증업무를 주관하여 운영하는 기관(이하 "운영기관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민간부문: 「한국산업인력공단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
  2. 공공부문: 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」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<개정 2021. 11. 18.>
- ② 총괄부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인증운영 참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1. 민간부문: 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」에 따른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「산업발전법」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, 「중소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,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 <개정 2021. 11. 18.>
  2. 공공부문: 「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·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」에 의한 한국행정연구원, 「한국지방행정연구원육성법」에 의한 한국지방행정연구원, 그 밖에 협의회에서 정하는 단체 및 기관
- ③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1.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시행
  2. 인적자원개발 컨설팅
  3. 인증심사위원의 양성 및 연수
  4.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
  5. 기타 인증에 관한 사업으로서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

## 제4장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

**제10조(인증사업 시행계획의 공고)** 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과 총괄부처가 수립한 사업추진계획에 의거하여 세부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심사위원 구성)**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제 심사를 위하여 정부기관·산업계·학계·연구계 등 관련 전문가로 심사위원 후보군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 11. 18.>

**제12조(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)** ① 심사위원은 신청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며,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.

1. 인적자원관리

2. 인적자원개발
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

② 심사위원은 신청자가 소속한 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한다.

1. 인적자원관리

2. 인적자원개발

3. 기타 심사에 필요한 사항

③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심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 대표 10인 이내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.

④ 심사위원회는 구성 후 15일 이내에 인증심사 결과를 심의하고 최종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## 제5장 예산집행

**제13조(위원의 수당 등)** 인증제 사업에 참여한 심사위원, 심사위원회 및 인증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개정 2018. 12. 26.>

**제14조(현지활동비)** 심사위원에게는 방문조사 활동에 필요한 현지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6장 보칙

**제15조(비밀유지의 의무)** ① 인증제에 참여한 위원은 인증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별기관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공표·누설하거나 업무수행을 위한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<개정 2021. 11. 18.>

② 운영기관의 장은 비밀유지 및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심사위원에게 별도의 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.

**제16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매년도 인증사업 추진계획은 총괄부처가 참여부처와 협의하여 수립한다.

**제17조(재검토기한 3년)** 고용노동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개정 2018. 12. 26.>

부칙 <제2021-90호,2021.11.18.>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